

光州廣域市西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6年 2月
企劃總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12月18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
및提出者
- 나. 回附日字 : 1995年 12月 18日
- 다. 上程日字 : 第54回 西區議會(臨時會) 會期中
第3次 企劃總務委員會(1996年 2月 29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企劃監查室長 李 龍 玉)

가. 提案 事由

-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를 조정, 부의안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사와 책임의식 제고에 있음.

나. 主要骨子

-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 조정

- 현재 : 21명 (부구청장, 각국장, 전실·과장)
- 조정 : 10명 (부구청장, 각국장, 보건소장, 실장 2, 각국 주무과장)

3. 専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専門委員 朴 鍾 根)

○ 본 조례안은 제출이후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실·과 명칭이 변경되고,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중요 업무 부서인 건설과장, 청소행정과장을 포함 12명으로 조정하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수정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1996. 2. .

발의자 장헌일 의원외 8인

1. 수정사유

- 부의안건에 대한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사, 의결 기능 수행과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현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,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제2조 제3항중 "각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장, 문화공보실장, 총무과장, 사회과장, 도시개발과장"을 "각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장, 구정발전담당관, 총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지역교통과장, 청소행정과장, 지역경제과장, 건설과장"으로 한다.

3. 기타 참고사항

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3항중 "각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장, 문화공보실장, 총무과장, 사회과장, 도시개발과장"을 "각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장, 구정발전담당관, 총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지역교통과장, 청소행정과장, 지역경제과장, 건설과장"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구성) ① - ② (생략) ③ <u>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·과장으로 하고</u>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 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 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	제2조(구성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각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</u> <u>사실장, 문화공보실장, 총무과장, 사회과</u> <u>장, 도시개발과장</u> ----- -----.	제2조(구성) ① -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<u>각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</u> <u>장, 구정발전담당관, 총무과장, 사회복지과</u> <u>장, 지역교통과장, 청소행정과장, 지역경제</u> <u>과장, 건설과장</u> -----.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중 "국장 및 실·과장"을 "각 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장, 문화
공보실장, 총무과장, 사회과장, 도시개발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구성) ① - ② (생략)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·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하	제2조(구성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각 국장, 보건소장, 기획감사실장, 문화공보실장, 총무과장, 사회과장, 도시개발과장 ----- -----. 생략

1996年 3月 2日

第54回 臨時會

審 查 報 告 書

社 會 都 市 委 員 會